

**조례**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5-** (전화번호 75-6379)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_\_\_\_\_  
 시행일자: **80. 1.**  
 보존년한: \_\_\_\_\_

*Handwritten signature*  
 결재 1980. 1. 19 44  
 법무장관

보조기관: 제1부 시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기안책임자: **이달주**  
 협조: 법제계장 *Handwritten initials*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발송신: \_\_\_\_\_  
 통제: \_\_\_\_\_

제목: **서울특별시 한강보전 위원회 조례 (제정)**

(제1안) 내부 결재

1. 환입1437-119 (79.12.26)호와 관련임.  
 2. 동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무181.5-910 (79.10.30)호로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현수도행정자문기관의 하수환경등 본과위원회의 종합적으로 검토 강구토록 반력되었던바 (국행삼 181.5-1222, 79.12.6)

3. 동조례의 제정목적인 한강의 오염방지과 정화 및 자연풍치의 보전을 위하여는 수도행정자문기관의 본과위원회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학계, 예술계등 각계 인사와 시민대표등으로 독립한 위원회를 구성 수도 서울의 동맥인 한강의 보전을 위한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첨부: 1. 제정이유 1부  
 2. 주요내용 1부  
 3. 제정안 1부. 끝.

1980. 1. 19  
 서울특별시  
 법무장관

(제2안)
수 신 : 국무총리
참 조 : 행정조정실장
제 목 : 조례(제정) 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를 별첨(안)과 같이 제정코자 서울특별시 행정예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 합니다.
첨 부 : 1. 제 정 이 유 1부
2. 주 요 내 용 1부
3. 제 정 안 1부. 끝.
(제3안)
수 신 : 법제처장
제 목 : 조례 제정안 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를 별첨(안)과 같이 제정코자 국무총리훈령 제146호 (78.3.26)에 의거 심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 정 이 유 3부
2. 주 요 내 용 3부
3. 제 정 안 3부. 끝.

제 정 이 유

한강의 오염방지과 정화 및 자연풍치의 보전을 위하여  
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등 각계인사와 유관단체기관,  
시민대표등으로 한강보전위원회를 구성 시장의 자문에 응  
하고 자동 조력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1. 위원회구성 : 50인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2인 포함)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2. 위원회기능 : 한강보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
  - 가. 기본 계획과 종합대책
  - 나. 조사, 연구
  - 다. 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
  - 라. 홍보 및 계도
  - 마. 보전협의회 및 보전운동 추진단체의 구성·운영
  - 바. 기타 보전에 필요한 사항
3. 소위원회 구성 : 특별한 조사·연구의 필요시 구성 (위원장 포함  
10인이내)  
위원장 - 상임위원
4. 전문위원 : 전문 기술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연구원과 연구  
보조원을 둠 (지방전문직원 규정에 의한 전임직원)
5. 수당지급 : 위원수당 - 20,000원/1일  
의견청취 - 20,000원/1일  
출장여비 -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1 (제1호 해당 정액)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의 오염방지와 정화 및 자연풍치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한강보전의 기본 계획과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한강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한강보전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4. 한강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5. 한강보전협의회 및 한강보전운동 추진단체의 구성, 운영 방법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한강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조사연구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50인이  
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문학예술계, 사회단체 기타 유관  
기관과 시민 대표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되, 상임위원은 환경국장이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개최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나 전문적 학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특별한 조사, 연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되며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의견 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1) 위원장은 한강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등) (1) 한강보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전문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전임직원으로 하고 채용조건, 보수등은 지방전문직원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간사)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제11조 (수당등 지급)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의견  
청취시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수당 : 1일 20,000원
2. 조사나 연구등을 위한 출장여비 :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에 해당하는 여비 범위
3. 전문가의 의견청취 : 1일 20,000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원 및 전문위원등의 위촉, 한강보전을 위한  
회의소집 및 수당등의 지급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